##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3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박수민 · 이인선 · 서명옥

김승수 • 이종욱 • 박준태

박정하 • 박수영 • 김민전

서지영 · 김소희 · 고동진

한기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 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방위사업청(방산기술)·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 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국내산업 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제235조제5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b>.</b>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u>&lt;신 설&gt;</u>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산업기술</u>
<u>&lt;신 설&gt;</u>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5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	
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	
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	
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 -----.
- 1. ~ 6. (현행과 같음)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 용된 물품
  - <u>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u> 방위산업기술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방위산업기술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 <u>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u> <u>산업기술</u>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

     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

     기술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물품
  - <u>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u> <u>영업비밀</u>

	나.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
	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
	업비밀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